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 안도걸・임호선・황명선

정태호 · 양부남 · 조인철

권칠승·허 영·정진욱

서삼석 · 천준호 · 정준호

이강일 • 황정아 • 이기헌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,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.

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,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,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2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2조의2(세수의 재추계 및 보고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6월, 8월에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, 11월에 다음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.
  -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의 분석결과를 담은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추계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다음 달의 말일(11월 재추계의 경우 11월 15일)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추계 결과보고서에는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6월 및 8월의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92조의2(세수의 재추계 및 보
	고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
	제33조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
	에 제출된 다음 6월, 8월에 당
	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,
	11월에 다음연도 세입예산을
	재추계하여야 한다.
	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
	따른 추계의 분석결과를 담은
	세입예산 재추계 결과보고서를
	작성하여 재추계가 완료된 날
	이 속한 다음 달의 말일(11월
	재추계의 경우 11월 15일)까지
	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
	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
	한다. 이 경우 재추계 결과보고
	서에는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
	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
	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
	되어야 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6월 및 8월의
	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세입예
	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
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제출하여야 한다.